

2020년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0. 4. 16.(목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4명 참석
- 심의위원: 김경숙(분과위원장), 최승수, 박정인,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20-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
정권고 심의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2,157건(안건번호 제2020-9384호~1090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0-9384호~9397호는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9398호~9406호는 블로그 이용자가 영상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9407호는 커뮤니티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메신저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0-10904호~1090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불법복제물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아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2,088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0개, 총 1,19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안건번호 제2020-17778호~18968호)
- 회의결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0개, 총 1,191개의 URL 정보에 관해 검색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5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음. 제2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이 공개될 경우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게 되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록은 비공개함이 바람직해 보임.
- A 위원: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같은 생각임.
- D 위원: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다음은 제1호 안건인 회의록 6쪽의 저작물명, 게시

물 내용, 7쪽의 OSP명, 저작물명, 출판사명, 8쪽의 저작물명, 출판사명, 9쪽의 게시자명,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저작물명, 민원인 신고 내용, 10쪽의 게시물 내용,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광고명, 11쪽의 방송사명, 14쪽의 위원명, 17쪽의 게시자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D 위원: 해당 정보는 민원인 신고 건과 관련된 내용이 많음. 비식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A 위원: 게시물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해당 내용은 비공개해야 함.
- B, C 위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게시물 내용, OSP명, 출판사명, 게시자명, 블로그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민원인 신고 내용, 광고명, 방송사명, 위원명, 게시자명은 비식별 처리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20쪽~26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건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C, D, B 위원: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금일 심의대상은 안건번호 제2020-9384호~10905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2,157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84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웹하드 사이트에서 일본 만화 '▲▲▲▲ ▲▲'을 jpg 파일로 전송한 사안임.
'▲▲▲▲ ▲▲'은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20. 2. 13.에 30권까지 출간되었음.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4,50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할 수 있음. 해당 만화 저작물 판매 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85호~9386호는 자신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에서 웹소설 '▲ ▲▲▲▲▲ ▲▲▲▲ ▲▲▲▲'와 '▲▲▲▲ ▲▲▲▲ ▲▲▲▲'를 gif 파일로 각각 전송한 사안으로, 총 7개 게시물임.

웹소설 '▲ ▲▲▲▲▲ ▲▲▲▲ ▲▲▲▲'는 우리나라 출판사 '▲▲▲▲▲▲ ▲▲'에서 2019. 8. 30.에 4권까지 출간되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약 2,61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웹소설 '▲▲▲▲ ▲▲▲▲ ▲▲▲▲'는 우리나라 출판사 '▲▲▲'에서 2019. 8. 30.에 4권까지 출간되었음. 인터넷 서점에서 전자책으로 약 2,610원에 판매 중임. 네이버 시리즈에서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87호~9394호는 실명의 민원인 1명과 익명의 민원인 1명, 총 2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총 8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 ▲▲▲▲', '▲▲▲▲▲', '▲▲▲▲', '▲▲▲▲ ▲▲▲▲▲', '▲▲▲▲▲ ▲▲▲▲▲ ▲▲▲'. '▲▲▲▲▲▲▲▲▲▲, ▲▲▲ ▲▲▲▲ ▲▲▲', '▲▲▲▲▲ ▲ ▲▲▲▲'을 각각 전송함.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395호~9397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것으로, 총 3개 게시물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 '▲▲▲▲▲ ▲▲▲▲', '▲▲▲▲'▲ '▲▲▲▲▲ ▲▲▲▲', '▲▲▲▲'▲ '▲▲▲ ▲▲▲(▲▲▲ ▲▲▲ ▲▲▲▲▲▲▲)' 뮤직비디오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0 포인트에 판매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9384호~939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통상적으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 전체 공개되므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하지만 네이버에서는 '바이브'라는 서비스에 가입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0호는
영화 ‘♣♣ ♣♣♣♣♣♣ ♣♣♣ ♣♣♣♣♣ ♣’을 3개의 스트리밍 영상
으로 나누어 한글 자막, 영화 포스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
상 게시물을 접속하여 보여주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4호는
영화 ‘♣♣♣♣’를 2개의 스트리밍 영상으로 나누어 포스터와 함께
제공한 사안임. 해당 영상은 우리말로 더빙한 버전임. 심의대상 게
시물에는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5호는
영화 ‘♣♣’를 스트리밍 형태로 영화 포스터와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1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을 4개의 스트리밍 영상
으로 나누어 한글 자막, 포스터와 함께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
시물에는 PC, 모바일 접속 시 한글 자막 설정 방법을 함께 설명하
고 있음. “♣♣♣♣♣♣♣♣♣♣♣♣♣♣ ♣♣ ♣♣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2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 ♡♡♡’을 3개의 스트리밍 영상으로 나누어 포스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상은 우리말로 더빙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3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 ♡♡♡♡ ♡’을 2개의 스트리밍 영상으로 나누어 포스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해당 영상은 우리말로 더빙되어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6호는 일본 애니메이션 ‘♡♡♡♡’를 2개의 스트리밍 영상으로 나누어 한글 자막, 포스터와 함께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에는 “♡♡ ♡♡♡...♡, ♡♡ ♡♡♡ ♡♡ ♡♡ ♡♡♡♡ ♡♡♡ ♡♡ ♡♡♡♡ ♡♡ ♡♡ ♡♡ ♡♡♡ ♡♡ ♡♡♡ ♡♡♡.” 등의 댓글이 달려 있음.

- B 위원: 해당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일본 ‘♡♡♡♡ ♡♡♡’의 대표작임. 최근 ♡♡♡♡가 ‘♡♡♡♡ ♡♡♡’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원인 신고가 다수 들어온 것으로 추측됨.
- A 위원: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유료로 제공 중이라면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명백함.

- B 위원: 안전번호 제2020-9399호~9406호는 닉네임 '♡♡♡♡'이라는 동일인이 불법복제물을 전송한 것으로 보임. 해당 블로그를 접속하여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영화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불법복제물을 공유하고 있음. 참고로 안전번호 제2020-9398호의 게시자 '♡♡♡♡♡♡♡♡'은 안전번호 제2020-9399호~9406호의 게시자 '♡♡♡♡'과 동일한 게시자임.
- 사무처 고아라 선임: 안전표 작성 기준은 민원인 신고 내용임. 민원인이 신고했을 때 블로그 운영자의 닉네임과 아이디를 혼동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2020-9398호~9406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 D 위원: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A 위원: 시정권고 요건을 충족하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가결 의견에 동의함.

채팅방은 입장한 이후에 공유된 파일만 다운받을 수 있는 반면 텔레그램 채팅방은 입장하기 전에 공유된 파일까지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됨. 게시판의 특성과 다르게 볼 수 없음.

- D 위원: 불법적으로 전송된 파일을 직접 다운받아 보여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해당저작물은 수학 기출 문제집임.

- B 위원: 공지사항을 클릭하여 주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공지사항에는 “●●●●●●●● ●●●●●● ●●●● ●●●●
●●● ●●●● ●●●●●●. ●●●●●● ●●●●●●●● ●●●●●●●● ●●●● ●●●●
●●● ●●●● ●●●● ●●●●●● ●●● ●●●●●●.”라는 내용이 게시되어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 등을 게시한 행위 자체가 저작물의 복제·전송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심의대상 게시물의 직접 링크(direct link)를 ‘저작권이나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문제됨.
우선 링크 설정 게시물이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지 살펴보겠음. 대법원은 “링크를 하는 행위 자체는 위와 같이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 등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여, 인터넷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함으로써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아니한 저작물을 게시하거나 인터넷 이용자에게 그러한 저작물을 송신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자의 복제권이나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웹페이지 등에 직접 연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침해행위

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링크 행위 만으로는 위와 같은 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심층링크(deep link) 또는 직접링크(direct link)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링크 글을 게시한 자의 저작권법 위반의 형사 방조책임을 부정한 바 있음. 그러나 그 후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를 통한 동영상 공유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민사 방조책임과 관련하여,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30. “이 사건 링크행위는 실질적으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예의 이용제공의 여지를 더욱 확대시키는 행위로서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 게시자의 공중송신권(전송권) 침해행위에 대한 방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하여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권리 ‘침해’라 함은 민·형사적인 침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따라서 링크설정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통해 불법복제물로 바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링크를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방)을 통해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팅방(“○○○○○○○○○○” 방)으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방조책임이 인정된 판례 사안과 차이가 있음. 한편 ‘○○○ ○○ ○○’은 ‘○○○○○○○○’에서 2020. 3. 6. 출간되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21,600원에 판매되고 있음. ‘○○○ ○○○○ ○○’는 ‘○○○○○○○○’에서 2020. 3. 17. 출간되었으며, 인터넷

서점에서 권당 약 23,400원에 판매 중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940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텔레그램 메시지를 대상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는 없음.
- 성원영 전문위원: 텔레그램은 해외에서 서버를 운영하고 있음. 시정 권고는 법위반 사실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정처분의 일종임. 구글이나 유튜브 등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텔레그램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는 없음. 행정법규의 역외 적용은 주권침해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음.
- A 위원: '○○○○○○○' 사이트에 대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C 위원: 안전번호 제2020-9407호는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텔레그램 채팅방으로 링크를 설정한 사안임.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 방은 '○○○○○○○○○○○○○○○○' 방이라는 최종 목적지까지 연결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주는 '정보'에 해당함. 불법복제물을 제공하는 채팅방으로 연결되는 링크 게시물은 저작물은 아니지만 제133조의3의 시정권고의 대상인 '정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의 링크 게시물은 시정권고를 가결함이 타당함.

- B 위원: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공중에 제공하고 있어 시정권고를 가결함.
- D 위원: 해당 저작물의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가결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9407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08호~9443호는 웹하드 사이트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에 관한 사안임.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오토데스크(Autodesk)사의 'AutoCAD',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Photoshop', 한글과컴퓨터사의 '한컴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의 'Office' 등의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검토된 안전은 시리얼 넘버를 포함하고 있거나 자동 인증되어 있거나 크랙이 포함되어 있는 등의 건임. 총 36개 안전, 38개 게시물임.
(안전번호 제2020-9443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그중 안전번호 제 2020-9443호의 게시자는 “반드시 인터넷선 제거(노트북은 반드시 무선네트워크 끄세요.)”, “키젠프로그램 특성상 백신에서 악성코드로 인식해 자동삭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감시기능 끌 것”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음.

- A 위원: 설치완료 후 인터넷을 연결하여 이용하면 추적이 불가능한지?
- 사무처 정현순 처장: 키젠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제품번호를 임의로 생성하거나 우회하여 키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임. 그렇다면 설치완료 후라고 하더라도 악성코드로 인식되어 문제가 될 것임.
- B 위원: ‘마이크로소프트’의 자체 백신프로그램은 키젠프로그램을 악성코드로 인식해 자동으로 삭제 처리함.
- 성원영 전문위원: (안건번호 제2020-940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시자가 ‘Autodesk Revit’을 판매하고 있으며, 저작권사인 오토데스크(Autodesk)가 1개월용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게시자는 “Crack 폴더 내 Install.TXT 참조”, “일련번호와 제품키가 자동입력”이라는 내용으로 게시하고 있음.
(안건번호 제2020-9419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게시자가 ‘Vegas Pro’를 판매하고 있음. 저작권사인 소니 크레이티브 소프트웨어(Sony Creative Software)가 1개월용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데 게시자는 크랙(Crack)이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있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어떤 온라인 게시물이 라이선스 인증이 요구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의 복제물과 해당 프로그램을 크래킹(cracking)하는 프로그램 또는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license key)를 함께 제공한 경우라면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어렵지 않게 인정된다고 할 것임.
Photoshop, After Effects, Premiere Pro, Lightroom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어도비(Adobe Systems)’, 한컴오피스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한글

과컴퓨터', MS OFFIC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Reivit, Civil 3D, 3DS MAX, AutoCAD, AutoCAD Electrical, AutoCAD Mechanical, Inventor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오토데스크(Autodesk)', Vegas Pr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소니(Sony Creative Software)', Cubas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스테인버그(Steinberg)', EditPlu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이에스 컴퓨팅(ES Computing)'은 각 홈페이지에서 1개월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CorelDRAW Graphics Suite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코렐(Corel)'은 홈페이지에서 15일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SolidWorks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다쏘시스템(Dassault Systems)', FL Studio 프로그램의 권리자인 '이미지 라인 소프트(Image Line Software)'는 데모버전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어도비(Adobe Systems)'사의 Adobe Master Collection 프로그램은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복제물이 정품 프로그램 또는 각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체험용 프로그램과 완전히 동일한 복제물(dead copy)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9408호~944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웹하드 사이트에서 상업용 소프트웨어 복제물을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키와 함께 제공하고 있는 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보여지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B 위원: 복제·전송자가 권리자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이 심의 대상 게시물은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즉 심의대상 게시물은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를 가결함.
- D 위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소명되었음. 가결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9408호~944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20-10904호~10905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제공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아니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10904호~1090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B 위원: 업로드 날짜가 언제인지?
- 사무처 고아라 선임: 날짜가 확인되지 않음.
- B 위원: 컴퓨터프로그램이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전송 사

실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 C 위원: 게임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임.
- A 위원: 정상적으로 실행되지 않으면 불법복제물 전송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해당 불법복제물이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닌 다른 유형일 가능성도 있음.
- D 위원: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하여 시정권고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불법복제물 전송 사실이 소명되지 않아 부결함.
- A 위원: 부결 의견에 동의함.
- B 위원: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2020-10904호~109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44호~10903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만화 '킹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51호는 일본

에서 2006. 5. 19. 출간, 한국에서 2007. 12. 15.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56권 미완결임.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4,500원이고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2,700원임. '만화 킹덤 1~609화'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만화 '나의 소년'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498호는 일본에서 2016. 2. 출간되고 한국에서 2017. 2. 25.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에서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총 7권 미완결이며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5,500원, e북 단권 판매가는 약 3,000원임. '나의 소년 1~30-1화'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음악 '작은 것들을 위한 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622호는 2020. 2. 21.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6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음원은 가수 '방탄소년단'의 정규앨범 'MAP OF THE SOUL'에 수록된 곡임. '멜론 2020년 3월 25일 TOP 100' zip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으며, 약 100곡 이용 가능함.

(만화 '데드 마운트 데스 플레이'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708호는 일본에서 2018. 4. 25. 출간, 한국에서 2019. 8. 31. 출간된 만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일본에서는 총 4권 미완결이며, 한국에서는 총 3권 미완결임. 정품 단권 판매가는 약 6,500원임. '데드 마운트 데스 플레이 1~45화'를 압축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영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861호는 2020. 2. 19.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55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14.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2020. 4. 7에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해당 영화는 49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였음.

(영화 '인비저블맨'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9870호

는 2020. 2. 26.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278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14.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2020. 3. 20.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참고로 영화진흥위원회 영화산업통계자료에 따르면, 해당 영화는 2020년 3월 국내 박스오피스 1위 작품임.

(음악 'WANNABE'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0023호는 2020. 3. 9. 발매된 음원을 웹하드 사이트에서 무료로 제공한 사안임. 가수 'ITZY(있지)'의 미니앨범 'IT'z ME'에 수록된 곡임. 파일 확장자를 'zipwav'로 변경하여 제공하고 있음.

(영화 '용길이네 곱창집'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0441호는 2020. 3. 12.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84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2020. 4. 14. 기준으로 상영 중이며, 2020. 3. 23.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버즈 오브 프레이(할리 쿨의 황홀한 해방)'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20-10670호는 2020. 2. 5. 개봉한 영화를 웹하드 사이트에서 186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mkv 파일에 한글 자막이 포함된 파일을 제공 중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3. 4. 극장 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으로 안전번호 제2020-9444호~1090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정당한 권리가 아닌 자가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공중에 제공하고 있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큼.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 D 위원: 안전번호 제2020-9444호~10903호는 합법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 작지 않음.

- B 위원: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되었거나 전송이 중단된 경우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9444호~10903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10904호~1090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9384호~10903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 24쪽부터 30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17778호~18968호의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56회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4. 23.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최승수

위원 박정인

위원 최현용